SAFETY.

by Wholesale Industry ·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, 그 주기를 먼저 읽는 사람들

이번 호 — 위험물 세척 · 안전관리자 참여

안전관리자 '상주'가 아니라 '참여한 상태'에서 취급하라는 것이다.

아세톤·시너 같은 인화성 액체로 부품을 세척할 때 **안전관리자가 '상주'해야 한다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.**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⑦이 요구하는 것은 지정수량 이상을 다루는 제조소등에서 **자격 없는 작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**하라는 것입니다. 그 전에 제5조①이 묻습니다. 지정수량 이상을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다루고 있는가.

CONTENTS

02 **제5조와 제15조가 묻는 것** — 원문 · 지정수량 이상·미만 · '참여'의 뜻

03 **세척 작업장에서 세 번 묻는다** — 세 단계 판정 · 캘린더 · 현장 체크 5

04 **설비 확인 · 공급사 지도** — 납품 이력 확인표 · 세척 구역 설비 기준

이번 주 사고·행정 · 사실만 기록

전북소방본부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공장·창고의 위험물 허가 여부, 도료·오일·폐유 보관 실태, **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·취급 기준 준수 여부**를 단속합니다. 대구소방안전본부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속가공·도금·도장 사업장 258곳의 위험물 취급·환기 실태를 조사합니다.

두 기관 모두 10월 16일 부천 금속 공장 화재(8명 사상)를 계기로 들었습니다. **부천 화재 원인은 공식 확정되지 않아 조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.**

출처: 서울신문 2026-10-20(전북소방본부), 한국사회복지저널 2026-10-21(대구소방안전본부)

위험물 취급 ·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· 제15조

지정수량이 법을 가르고, 자격이 '참여'를 가른다.

위험물안전관리법 원문(발췌)

제5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**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** 제15조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**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**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세척 작업에 걸리는 항목 — 제5조·제15조 요지

1	**지정수량 이상**	제조소등에서만 취급(제5조①)	2	**여러 품목**	수량÷지정수량 합계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(⑤)
3	**임시 취급**	소방서장 승인 시 90일 이내 (제5조②1호)	4	**선임**	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(제15조①)
5	**재선임·신고**	해임·퇴직 30일 이내 재선임, 14일 이내 신고	6	**대리자**	직무 대행 30일 초과 불가 (제15조⑤)
7	**무자격자**	안전관리자·대리자 참여 상태에서 취급(⑦)	8	**지정수량 미만**	시·도 조례 기준 — 제15조 직접 적용 아님

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(수용성)로 지정수량 400L, 경기도 조례는 그 5분의 1인 80L부터 기준을 둡니다(2026-09-17 팀 검증 메모). 사업장 품목·관할 조례로 확인하십시오.

'상주'와 '참여'는 다르다

제15조⑦은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에 늘 머물라는 조항이 아닙니다. **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위험물을 다룰 때**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. 자격자가 직접 취급하는 작업은 ⑦의 대상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 문구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으로,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닙니다.

그래서 세척 작업장이 먼저 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**수량**입니다.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허가와 안전관리자 선임이 앞서고, 미만이면 시·도 조례의 기준을 따릅니다. 제15조를 400L 미만 작업장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산안법 축 수량과 별개로,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있어 폭발·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가 ① 환기장치 ② 가스 검지·경보 장치를 요구합니다. ②의 면제는 0종·1종 장소에 제311조 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. 위험물법은 수량을, 산안규칙은 증기를 봅니다.

검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·제15조, 산안규칙 제232조 — 2026-09-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열람. 지정수량·조례 기준은 품목·관할별 확인 대상입니다.

세척 작업 판정 · 제5조 · 제15조 · 제232조

수량을 보고, 장소를 보고, 사람을 본다.

판정 흐름 — 세척 용제 한 통을 놓고 세 번 묻는다

Q1	**세척 용제 전체(여러 품목 합산)가 지정수량 이상인가** 아니오 → 시·도 조례 기준 확인(소량위험물)	5조⑤
Q2	**그 수량을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취급하고 있는가** 아니오 → 제5조① 위반 소지, 허가·수량 조정부터	5조①
Q3	**작업자가 위험물취급자격자인가** 아니오 → 안전관리자·대리자 참여 상태에서 취급	15조⑦

법령·설비 캘린더

설비·문서	법령·기준	요구	주기·조건	다음 도래 계산
제조소등 허가	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①	지정수량 이상은 제조소등에서만	취급량 변경 시	품목·수량 늘 때 재확인
위험물안전관리자	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②③	선임·재선임·신고	해임 30일·선임 14일	해임·퇴직일 기준 계산
대리자 지정	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⑤	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행	30일 초과 불가	부재 시작일 + 30일
무자격자 취급	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⑦	안전관리자·대리자 참여	작업 때마다	세척 작업 일정에 배정
환기·가스 검지 장치	산안규칙 제232조	환기, 검지·경보 장치 설치	0·1종+방폭기기만 면제	구분도 종별 변경 시 재판정

현장 체크 — 세척 구역에서 자주 빠지는 다섯 가지

1. **세척 용제 품목별 보관·사용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 합산했는가**
   제5조⑤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.

2. **작업장 밖 창고·대기 용기까지 수량에 넣었는가**
   개봉 전 용기와 폐용제가 같은 장소에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.

3. **세척 작업자 명단에 자격 여부가 표시돼 있는가**
   무자격자가 작업하는 날에는 안전관리자·대리자 참여를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(⑦).

4. **안전관리자 휴가·출장 때 대리자가 지정돼 있는가**
   제15조⑤의 대리자 직무 대행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5. **세척 구역에 환기장치와 가스 검지·경보 장치가 있는가**
   제232조는 수량과 별개로 증기에 따른 폭발·화재 우려 장소에 걸립니다.

검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·제15조, 산안규칙 제232조·제311조 — 2026-09-17 원문 열람. 지정수량·조례 적용은 관할 소방서 확인 대상입니다.

설비 확인 · 공급사 지도

우리가 아는 납품 이력부터 채워서 보내드립니다.

SAFETY. TERMINAL 파일럿 1기 · 무료

당사가 납품한 접지 모니터링·가스 감지기·방폭 기기가 있다면 품목·수량·납품일을 미리 적은 확인표를 보내드립니다. **세척 구역 위치와 사용 용제만 알려주시면** 제232조 검지·경보 장치 판정표와 제15조⑦ 참여 기록 양식을 함께 돌려드립니다.

등록: safety.wholesale-k.com/terminal/ · 확인표 요청: sales@wholesale-k.com · 031-372-3332

공급사 지도 · 접지·본딩 감시·가스 감지·방폭 접속 (중립 병기)

제조사보다 먼저 볼 것: 세척 구역 구분도 종별에 맞는 방폭 등급, 국내 안전인증 표시, 점검 기록이 남는 방식.

분야	제조사(알파벳순)	비고
정전기 접지·본딩 감시	Newson Gale · 국내 제조사	Newson Gale 취급
가스 감지	Dräger · Honeywell · MSA · Riken Keiki · Uniphos	Uniphos 취급
방폭 접속·배선	Marechal · R. STAHL · Technor · 국내 제조사	Marechal·Technor 취급



Bond-Rite EZ — 용기 간 본딩 사용 예. Courtesy of Newson Gale Ltd. — 제조사 제공 사진, AI 생성 아님.

선택 기준 세 가지

등급 세척 구역이 구분도상 몇 종인지 보고, 그에 적합한 방폭구조 기기인지 확인합니다 (제311조).

검지 사용 용제 증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가스 검지·경보 장치인지 봅니다. 대상 가스는 모델별로 다릅니다.

접지 제325조①은 인화성 유기용제 사용 설비 등에 확실한 접지를 요구합니다. 감시 장치는 이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.

편집 원칙 정보면(1~3면)과 제품면(4면 하단)을 분리합니다. 제품면에도 경쟁사를 함께 싣고 순위·추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 제품 사진은 제조사 제공 사진만 사용합니다. 틀린 것은 다음 호에서 원문과 함께 정정합니다.
다음 호 예고 — 사람도 대전된다 — 제325조② 인체 정전기.